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2022년 7월 22일  
행정·재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2년 7월 1일
- 나. 제안자: 김민석 의원 외 6명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7월 13일
- 라. 상정일자: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7.22.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민석 의원)

#### □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,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라. 예술인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- 마. 예술인 지원 사업 및 위탁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안 제8조)
- 사. 위원의 임기,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~ 안 제11조)
- 아.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~안 제14조)
- 자. 예술인의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, 제4조
- 2) 「예술인 복지법」 시행령 제2조
- 3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11조

#### 나. 협조부서: 문화체육과

다. 입법예고(2022. 7. 8. ~ 7. 13.) 결과: 의견 있음(붙임 참고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#### 가. 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

#### 나. 검토 내용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“예술인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2조에서 ‘예술인’이란 「예술인 복지법」

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종사자이거나 강서구 소재 문화예술단체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' 이라고 정의하고 있음

-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의 “예술인” 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(예술활동의 증명)에 따라 저작물, 소득 등 양적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부여되며 우리 구 예술인 활동증명 등록 현황<sup>1)</sup>은 전국 143,274명 중 5.35%인 2,856명임(2022. 7. 8. 기준)

-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구체화하고 그 사업이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

1) 우리 구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현황(전국 143,274명 중 2,856명, 5.35%)

[출처: 한국예술인복지재단, 2022.07.08. 기준]



※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「예술인복지법」에 의거, 예술을 업(業)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

-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
  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위원회 설치)에 의하면 ‘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,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설치가 가능’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  - 다만,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을 살펴볼 때 우리 구 다른 위원회와 중복여부에 저촉되지 않는 등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, 위원회 총괄부서의 위원회 신설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  - 안 제9조에서 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”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안 예고 결과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 가능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음
  - 우리 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원의 임기)에 의하면 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’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실행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안 제15조는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예술인의 활동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예술인이 지역,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
- 그동안 우리 구는 매년 ‘문화예술 행사운영 기본계획’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, 자생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<sup>2)</sup>하고 있었으나 예술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- 또한,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 직종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과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문화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

---

#### 2) 예술인 복지 관련 강서구 2022년 예산

연번	세부사업명	예산액(백만원)	사업내용
1	염창문화예술창작 공간 운영	11	지역 내 예술인의 문화예술창작 활동 지원
2	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	20	
3	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	419	구립예술단체(합창단, 국단) 문화예술단체(문인협회 등 7개 단체)
<b>총 액</b>		<b>450</b>	

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## **6. 토론요지: 생략**

## **7. 심사결과: 수정가결**

## **8. 수정안의 요지**

### **가. 수정이유**
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고, 위원의 임기에 연임 규정을 신설함

### **나. 수정내용**

-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한다.
- 제9조 본문 중 “2년으로 한다”를 “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 (붙임 수정대비표 참조)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**불임****수정안 조문 대비표**

원 안	수 정 안
<p>제7조(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 한다</u>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둘 수 있다.</u>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-- <u>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</u> ----- -----.</p>

## ■ 예술인 복지법

### 제2조(정의)

2. “예술인”이란 예술 활동을 업(業)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,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,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

제2조(예술 활동의 증명) ① 「예술인 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저작권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
  2.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
  3. 삭제 <2014. 3. 28.>
  4. 삭제 <2014. 3. 28.>
  5. 삭제 <2014. 3. 28.>
  6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
-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., 2016. 5. 3.>

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,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,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위원회 설치)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,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
2.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
3. 위원의 구성 및 임기
4. 존속기한 및 예산 등

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□ 문화체육과**

의원발의 조례	검토 의견	
	수정안	사유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..	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 <u>으로 하며 연임할 수</u> <u>있다...</u>	-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규정 명기 필요